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5년 2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15년 2월 24일

3. 제안이유

보유 건설기계의 감소로 민간임대와 도급공사 시행이 어렵고 자체 정비공장의 폐지 등에 따라, 주요 규정의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

5. 검토내용

-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건설기계는 6종 21대로 민간의 건설기계 보유대수가 많이 증가해 사업소 임대수요는 거의 없으며,
- 그 동안의 임대실적도 미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실정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6. 검토의견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를 검토한 바, 보유 건설기계의 감소로 민간임대와 도급공사 시행이 어렵고 자체 정비 공장의 폐지 등에 따라, 주요 규정의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